

[2012년 해경 승진시험(경장) 해설 및 정답]

문1.

[해설] 조문과 이론

- ① 승낙 살인죄, 동의 낙태죄 등이 있다.
- ② 승낙은 명시적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친구가 자기 지갑에서 돈을 가지고 가는 것을 보고도 그냥 가져가게 두는 경우이다.
- ③ 무고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심판권과 개인의 법적 안전이다. 국가적 법익에 관한 내용으로 개인의 승낙이 있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한다.
- ④ 승낙의 내용도 적법하여야 한다.

[정답] ②

문2.

[해설] 판례

대체로 쉬운 판례이다. 4번의 경우 정당행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간통의 정황이 확실할 때 경찰관을 동행하고 가는 것이다.

[정답] ④

문3.

[해설] 판례

- ① 행위 당시의 심신장애 여부를 따져서 판단한다.
- ② 사실의 인정뿐만 아니라 규범적 판단도 해야 하기 때문에 법원은 감정인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는다.
- ③,④ 소아기호증이나 생리도벽 같은 질병들은 그 상태가 정신질환으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할 때 형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

[정답] ②

문4.

[해설] 판례

법률의 착오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암기해 두는 것이 좋다.

보통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한 경우가 대표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다.

[정답] ②

문5.

[해설] 판례

개괄적 과실에 관한 판례이다. 결과적 가중범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상해를 가하고 죽은 줄 알고 사망하게 하였다면 상해죄와 과실치사죄가 되는데 결국 결과적 가중범 형태인 상해치사죄로 처벌하는 것이 판례이다.

[정답] ②

문6.

[해설] 판례

유기죄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의무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강간치상범은 선행행위에 의한 보호의무는 있을지라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의무는 없다. 따라서 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③

문7.

[해설] 판례

① “한번 만나자, 나한테 자신 있나?”라는 표현은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③ 해악의 고지는 꼭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④ 아버지로서 훈계의 차원을 넘어선 행위로 정당행위가 될 수 없다.

[정답] ①

문8.

[해설] 이론 적용

정당방위는 정 대 부정의 관계이고, 긴급피난은 정 대 정의 관계이다. 정당방위에서 부정이란 사람의 위법한 행위를 말하는데 이 사안에서는 개가 공격한 경우이다. 개의 행위는 부정이라고 할 수 없으나 이 경우처럼 사람에게 의해서 사주받은 경우 사람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유리그릇 파손은 개의 공격이라는 위난을 피하기 위한 긴급피난이 된다.

[정답] ②

문9.

[해설] 판례와 이론

① 소유자와 점유자 모두에 대한 관계에서 친족관계가 있어야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그러나 사기죄의 경우에는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친족관계가 있으면 되고 피기망자와의 관계에서는 필요 없다.

②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한 친족이라는 사실은 고의의 인식 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처벌조건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③ 친족상도례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④ 인지는 소급효가 있어서 범행 당시에는 인지가 없었더라도 사후에 인지한 경우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정답] ④

문10.

[해설] 판례

전기료에 대한 문제는 민사적인 사안이다. 형법적 관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정답] ④

문11.

[해설] 조문 적용

- ① 차를 빌려서 범죄에 사용하더라도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 사용이지만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 ② 다른 장소에 버린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절도죄가 된다.
- ③ 상습절도죄에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도 포괄된다.
- ④ 불법사용이란 자동차 등 소유자의 동의없는 운행을 의미하므로 자동차 등의 본래 용법에 따라 통행수단으로 일시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③

문12.

[해설] 판례

준강도가 되기 위해서는 절도의 기회에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따라서 목적범이다. 그런데 보복의 목적은 준강도죄에서 요구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준강도죄는 성립하지 않고 절도미수와 폭행죄로 나누어 갑의 죄책이 정해진다.

[정답] ③

문13.

[해설] 판례

강도강간죄는 강도가 강도의 기회에 부녀를 강간한 때에 성립한다. 강도의 대상과 부녀가 다른 사람이어도 관계없다.

- ① 강간 -> 강도 -> 강간의 순서라도 강도의 신분을 얻고 또 강간을 했기 때문에 강도강간죄가 된다.
- ② 강도의 기회이기 때문에 강도죄의 미수 상태에서 강간을 하여도 강도강간죄는 기수가 된다.
- ③ 직접 강간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자녀들을 감시한 것은 특수절도할 때 망을 본 것처럼 공동정범이 된다. 따라서 강도강간죄의 공동정범이다.
- ④ 강도의 기회이면 되므로 강도의 대상과 강간의 대상인 부녀가 다른 사람이어도 본 죄는 성립한다.

[정답] ③

문14.

[해설] 판례와 이론

비공무원이지만 공무원의 수뢰행위를 공모하여 실행하였기 때문에 공무원의 신분이 함께 적용된다 (제33조 본문). 따라서 비공무원인 갑과 공무원인 을은 수뢰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정답] ④

문15.

[해설] 판례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주된 범죄에 이미 평가되었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는 범죄행위이다. 그러나 주된 범죄와 다른 보호법익을 침해하거나 침해의 양이 초과하게 되면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지 않는다.

- ① 절도죄(개인적 법익)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사회적 법익)가 성립한다. 서로 다른 보호법익이다.
- ② 약속어음의 편취의 대상과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어음할인 행위는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한다. 사기죄는 피해자별로 각각 성립한다.
- ③ 절도죄(개인적 법익)와 자동차관리법 위반죄(사회적 법익)가 성립한다. 서로 다른 보호법익이다.
- ④ 자기앞수표는 현금처럼 사용되기 때문에 이를 절취하고 사용하여 거스름돈을 받았어도 별도의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즉 현금을 절취하고 사용하여 거스름돈을 받은 경우와 동일하다.

[정답] ①

문16.

[해설] 판례

일단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을을 속여서 30만원을 취득한 것은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다.

부동산 처분을 위임받아 처분한 대가는 위임인인 갑의 소유가 된다. 그것을 보관하고 있는 갑이 횡령하였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고 갑이 을을 속였다고 하더라도 을의 30만원에 대한 처분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횡령죄만 성립한다.

[정답] ②

문17.

[해설] 판례

을이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으면 그 점포를 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협력의무). 이것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배임죄가 되고 이를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는 그 가담 정도에 따라 공동정범이 되거나 교사·방조범이 되는데 이 사안에서는 공모하여 실행하였기 때문에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정답] ②

문18.

[해설] 판례

- ① 심문기일소환장도 가치적 측면(주관적 가치가 있어도 절도죄의 객체가 됨)에서 재물이 되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된다.

- ② 공유관계에 있는 재물은 형법상 타인의 재물로 보면 된다.
- ③ 배임수재죄와 수뢰죄의 차이점이다. 수뢰죄는 수수, 요구, 약속한 경우 모두 처벌대상이 되지만 배임수재죄는 단순한 요구나 약속만 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다.
- ④ 은행에 예금을 하게 되면 예금은 은행의 소유가 되고 예금주는 단지 예금반환청구권만 가지게 된다. 따라서 은행직원은 예금주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④

문19.

[해설] 판례

입찰방해죄는 경쟁의 공정과 가격의 공정 두 가지를 다 보호법익으로 한다. 따라서 사안에서는 가격의 공정을 지켰을지라도 경쟁의 공정은 해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입찰방해죄가 된다.

[정답] ③

문20.

[해설] 판례

적법한 쟁의행위로 직장을 점거 농성을 하고 있더라도 적법한 직장폐쇄가 있는 경우 퇴거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퇴거를 명하는데 이에 불응하면 퇴거불응죄가 된다. 이때에는 적법한 쟁의행위일지라도 정당행위가 되지 않음에 주의해야 한다.

[정답] ②

문21.

[해설] 이론과 판례

- ① 잠재적인 이전의 자유를 가진 사람은 정신병자든지, 명정자(술 먹고 뺨은 사람)이든지 감금죄의 객체가 된다.
- ③ 특정 구역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는 무형적인 것도 가능하다. 예를들어 협박하여 못나게 하는 경우이다. 그래서 협박하여 감금한 경우 감금죄만 성립한다.
- ④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더라도 그 특정구역을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도 감금죄가 된다. 즉 사람이 언제든지 나가고 싶을 때 나갈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답] ④

문22.

[해설] 판례

①번의 내용처럼 ‘위계’는 허위의 사실 등으로 사람을 속이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진실한 사실을 게시하였으면 ‘위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업무방해죄가 되려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해야 하는데 그 타인에는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된다. 또한 업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내용이면 합법적이지 않아도 되고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않는다.

[정답] ②

문23.

[해설] 판례

피해신고를 하면 담당 공무원이 실사를 나와서 신고 사실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실사를 제대로 한다면 신고사실이 거짓일 경우 충분히 밝힐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 자체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는다. 같은 판례로 검찰에서 참고인 신문을 받는 경우에도 거짓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수사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참고인이 자신이 범인이라고 자처하지 않는 한 위계에 의한 공집방이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④

문24.

[해설] 조문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 객체가 되는 범죄는 어떤 업무를 보호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컴퓨터등 사용자기죄를 제외하면 모두 어떤 업무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들임을 알 수 있다.

[정답] ④

문25.

[해설] 판례

의사라도 공무원의 신분이면 그 진단서는 공문서가 된다. 따라서 허위공문서작성죄는 허위진단서 작성죄의 특별규정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의사가 작성한 허위진단서는 허위공문서가 되고 이를 작성해주고 뇌물을 받았다면 부정처사후수뢰죄가 된다.

[정답] ④

문26.

[해설] 판례

경찰관이 의무가 있는 습득물 처리를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하였기 때문에 직무유기죄가 되고 직무와 관련된 대가를 지급받았으므로 수뢰죄가 된다.

[정답] ③

문27.

[해설] 판례

증거위조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위조하는 것을 말한다. 사안은 자기의 형사사건이므로 증거위조죄는 되지 않는다.

결국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것인 양 속여서 수사를 방해하였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집방이 된다.

[정답] ③

문28.

[해설] 판례

- ① 판례는 보호관찰과 판례변경에 의한 소급효는 허용된다고 한다.
- ② 원칙적으로 부진정 소급효(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변경된 법을 적용하는 것)는 인정된다.
- ③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된 법규정은 애초부터 없었던 것과 같다. 따라서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무죄가 된다.
- ④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이 변경되더라도 부칙에 의해서 구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그 근거를 형법 제8조에서 찾는 것이 판례이다.

[정답] ①

문29.

[해설] 판례

- ① 위증죄의 ‘허위’는 주관적인 기억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고, 무고죄의 ‘허위’는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③ 비슷한 판례로 하나의 문서위조에 여러 명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상상적 경합이 되는 것이 있다.
- ④ 무고죄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으므로 피무고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한다.

[정답] ①

문30.

[해설] 조문 적용

자살을 결심한 자에게 이를 알면서도 권총을 내준 행위는 자살방조죄에 해당한다.

[정답] ④

문31.

[해설] 판례

적법행위 기대가능성에 관한 문제는 대체로 쉽게 나온다.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만 몇 개 알아두면 틀리지 않을 것이다.

[정답] ①

문32.

[해설] 판례

일반 절도죄와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실행의 착수가 다르다. 일반 절도죄의 경우에는 물색행위시설에 따라 훔칠 물건을 찾기 시작할 때 실행의 착수가 있게 되는데 보통 물건에 가장 근접하게 접근했을 때이다. 예를 들어 가방의 걸쇠에 손을 댄다든가, 호주머니에 손을 댄다든가, 자동차 문고리에 손을 댄다든가하는 경우이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는 주거침입시에 실행의 착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와 같게 된다.

- ① 차량 속 물건에 대한 절도는 차량의 문고리에 손을 댈 때 실행의 착수이다.
- ② 낮이기 때문에 물색행위를 해야 하는데 단지 주거에 침입한 정도로는 실행의 착수가 아니다.

- ③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출입문이든지, 창문이든지 문에 손을 댈 때 실행의 착수가 되는데 단지 초인종을 누른 행위로는 아직 실행의 착수가 아니다.
- ④ 매수인에게 대금을 모두 수령했다면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되는데 또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기 위해 중도금을 받았다면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무허가 건물이라도 일반 등기된 부동산과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 반대로 동산의 경우에는 이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최신판례가 있다.

[정답] ④

문33.

[해설] 판례

판례는 웬만한 경우 인과관계를 인정한다. 따라서 인과관계가 없다는 판례를 알아두는 게 수험적합적인 공부법이다. 3번처럼 비정상적인 피해자의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즉 인과관계를 검토할 때 판례는 예측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정답] ③

문34.

[해설] 이론

사실의 착오 문제이다. 살인의 고의로, 살인이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 사실의 착오에 해당하고, 잘못 우송되어 다른 사람이 사망했으므로 방법의 착오가 된다. 따라서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사망한 자에 대한 살인죄가 된다. 이런 문제를 빨리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착오를 해결하는 학설에 관한 도표를 잘 기억해야 한다.

구 분	종 류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
구체적 사실의 착오	객체의 착오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기수		
	방법의 착오			
추상적 사실의 착오	객체의 착오	인식 사실의 미수와 발생 사실의 과실의 상상적 경합		① 경죄 고의로 중죄 발생 → 경죄기수와 중죄과실의 상상적 경합
	방법의 착오			② 중죄 고의로 경죄 발생 → 중죄미수(중죄미수와 경죄기수의 상상적 경합)

[정답] ②

문35.

[해설] 판례

- ① pc방이나 당구장 같이 관리자가 있는 곳에 떨어뜨린 지갑을 가져가는 경우 절도죄가 된다. 반대로 고속버스나 지하철에 떨어진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된다.

② 금은방 주인의 처분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사기죄가 되지 않고 절도죄가 된다. 책략절도라고도 한다.

③ 접수인으로서 권한이 없는 자가 축의금을 받아 가로챈 경우 절도죄가 된다.

④ 심부름을 위해서 밀려받은 오토바이를 그대로 타고 간 것은 횡령죄가 된다.

[정답] ④

문36.

[해설] 이론

범죄성립요건은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이다.

① 고소는 소추조건이다.

② 책임능력에 관한 것이다.

③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에 관한 것이다.

④ 객관적 구성요건요소(행위객체)에 관한 것이다.

[정답] ①

문37.

[해설] 판례

① 공모하지 않은 시위 단순참가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이를 공동으로 책임질 수는 없다. 즉 승계적 공동정범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묵시적 의사연락이 있었고 역할 분담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으므로 공모공동정범이 된다.

③,④ 공모공동정범을 처벌하게 된 계기가 모든 것을 주도하고도 범죄 실행에는 참가하지 않은 범죄단체 수괴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안도 그와 유사하기 때문에 공모공동정범이 된다.

[정답] ①

문38.

[해설] 조문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도 그 대표적인 범죄는 암기사항이다. 친고죄의 경우 추행과 간음 관련 범죄와 사·모·비·누(사>사자명예훼손죄, 모>모욕죄, 비>비밀침해죄, 누>업무상 비밀누설죄)로 알아두면 좋다.

[정답] ①

문39.

[해설] 판례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 횡령죄의 방조범이다.

[정답] ②

문40.

[해설] 이론과 판례

1번이 정답인지 잘 모를 수도 있다. 그러나 나머지 지문이 쉬운 판례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을 고를 수 있는 기회는 있는 것이다. 문제 푸는 스킬이지만 일단 모르겠으면 긴장하지 말고 빨리 재치고 나머지 지문을 읽어보면 의외로 정답을 잘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 ① 형법이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것을 진정부작위범으로 보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규범대로 판단하므로 형식적 기준에 의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부진정부작위범은 형법상으로는 작위범으로 규정되어 있다.
- ② 선행행위에 의한 보호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여 익사하게 한 경우이므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된다.
- ③ 방조는 작위든, 부작위든 가능하다. 이에 비해 교사는 작위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부작위에 의해서는 불가능하다.
- ④ 같은 목적의 작위범과 부작위범이 경합되면 작위범만 성립한다. 따라서 범인을 도피시키기 위해 도피를 권유하는 전화를 했다면 범인도피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①

문41.

[해설] 판례와 이론

- ①, ② 형법의 적용시점은 범죄행위의 종료시이다. 따라서 구법과 신법을 걸쳐서 행해졌다면 그 범죄가 종료되는 시점인 신법이 적용된다.
- ③ ‘법률의 변경’에서 ‘법률’은 실질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므로 총체적 법률변경을 의미한다.
- ④ 재판확정 후에 경하게 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감경 규정이 없다. 대신 재판확정 후 법이 폐지되면 형집행을 면제한다.

[정답] ①

문42.

[해설] 이론

외국인이 외국에서 범죄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보호주의나 세계주의가 적용되면 재판권이 미치는 경우도 있다. 형법 제5조와 제6조가 거기에 해당한다. 사안의 경우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보호주의가 적용되어 우리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정답] ③

문43.

[해설] 이론

신뢰의 원칙은 교통이나 의료 영역에서 과실범의 인정 여부를 따질 때 적용되는 원칙이다. 즉 일정한 법규를 준수한다면 상대방의 돌발적인 행동에 대하여 주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에 대한 예외 규정도 있다. 인·신·사·스로 암기하면 편하다. 인> 상대방의 규칙위반을 이미 인식했을 때, 신> 상대방의 규칙준수를 신뢰할 수 없을 때(어린이, 노인 등), 사> 사고 다발지역, 스> 스스로 교통규칙을 위반하고 있을 때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미 중앙선을 넘어 비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신뢰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①

문44.

[해설] 이론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의 기본범죄로 과실의 중한 결과를 범한 경우이다.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에는 직접주의가 적용되어 기본범죄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중한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

- ① 과실치사상죄는 고의의 기본범죄가 없으므로 결과적 가중범이 아니다.
- ② 중한 결과는 과실에 의한 경우이므로 중한 죄로 처벌할 수 없고, 결과적 가중범이 형법상 규정되어 있을 때 기본범죄보다 중하게 처벌된다.
- ③ 제15조 제2항에서는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예견가능성을 명시하고 있다.

[정답] ④

문45.

[해설] 이론

정당방위는 부정 대 정의 관계이기 때문에 보충성의 원칙을 요하지 않는다. 보충성의 원칙은 정 대 정의 관계인 긴급피난에서는 요구된다.

[정답] ③

문46.

[해설] 조문 적용

약속어음을 주었다면 소유자는 을이다. 따라서 소유자 을의 어음 금액을 수정하였다면 문서손괴죄가 된다. 그런데 약속어음이기 때문에 문서죄의 문제가 아니라 유가증권죄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답] ①

문47.

[해설] 판례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허위’의 양도를 하는 경우 성립하는데 실제로 양도를 하였다면 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④

문48.

[해설] 판례

살인하기 위해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소사케 하였다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먼저 현주건조물에 방화를 하고 이후에 빠져 나오는 사람을 발견하고 못나오게 막아서 소사케 하였다면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정답] ②

문49.

[해설] 판례

권리의 행사라도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정당행위가 될 수 없고 범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이므로 공갈죄가 성립한다.

[정답] ③

문50.

[해설] 판례

중지미수에 관한 판례에서 중지미수를 인정한 판례는 2개 정도밖에 없다.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 사건과 ‘독약 먹었다가 한 사람 먹고 쓰러지니까 다른 사람 못 먹게 한 사건’이다.

[정답] ③